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711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7117호, 2019. 5. 2.>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제8조 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<u>2019년</u> <u>12월 31일까지</u> 적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7117호, 2019. 5. 2.>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20년</u> <u>12월 31일</u>-----.</p>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

I 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0호
- 제로페이 결제 시 사용료 감면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입감소분 손실보전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'19년 제로페이 이용료 1개월 평균 감면액 × 12개월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감면 손실분 보전	1,079					
	○						
	소계(b)						
□ 총 비용(a-b)							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1,079					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					

5. 덧붙이는 의견

6.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유지영(☎02-2133-4126)

II 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'19. 5월~9월 제로페이 할인액	1달 평균 할인액	'20년 할인 예상액	비고
금 액	423,883	89,863	1,078,364	